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○○○○○○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(2023.1.3.) 및 시행(2024.1.4.)과 관련하여,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하고,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공사감리자 지정신고 대상을 현장에 맞게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신고를 하여 설치하는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착공신고를 제외함(안 제4조)
- 나. 비상조명등을 신설 또는 개설할 때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던 것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상에서 제외함(안 제10조제2항)
- 다. “부정청탁 금지 제도의 도입”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(안 제11조의7 신설)
- 라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의 소방시설에 ‘화재알림설비’가 추가됨에 따라 소방시설업 영업범위에 ‘화재알림설비’를 추가함(안 별표1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.

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특정소방대상물(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.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)”을 “특정소방대상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6호의2를 삭제한다.

제1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7(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범위) 법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, 제21조의6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제11조의5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.

제19조의4제1항을 제4호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별표 1 제1호 비고 제1호나목1) 중 “시각경보기”를 “시각경보기, 화재알림설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의7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4일에 시행한다.

제2조(착공신고 제외 특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것은 제4조의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) 법 제13조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. <단서 신설>	제4조(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다만,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또는 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.
1. <u>특정소방대상물(「위험물 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.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)</u> 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.·나. (생략) 2.·3. (생략)	1. <u>특정소방대상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가.·나. (현행과 같음) 2.·3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) ① (생략)	제10조(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소방청 소방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5 - 7507